

「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9월 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2년 9월 1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용어와 근거 법령조항의 일부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군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변경(제2장제1절 제목 및 제3조)
- 용어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변경(제2장제2절 제목 및 제4조 ~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내용 중

용어 및 근거 법령조항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